| 문서번호 | 시설안전팀-5713 |
|------|------------|
| 보존기간 | 년 |
| 결재일자 | 2019.10.04 |
| 공개여부 | 공개 |

| ★담당자 | 팀장 | 건설안전본부장 |
|------|-----|--------------|
| 황인 | 정우철 | 10/04 임창수 |
| 협 조 | 부장 | 이을하 |
| 감 사 | 감사실 | 감사필 |

기락시장 청과D동 화물용 승강기 구매 설치 계약변경(2차) 시행

2019. 10.



기락시장 청과D동 화물용 승강기 구매 설치 계약변경(2차) 시행

가락시장 청과D동 화물용 승강기 구매 설치 계약의 승강기 안전부품 미인증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지연으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계약코자 함

Ⅰ 계약 개요

- 1. 계 약 명 : 가락시장 청과D동 화물용 승강기 구매 설치
- 2. 계약자:
- 3. 계약기간 : 2019. 5. 10. ~ 10. 6.(150일)
- 4. 계약금액 : 금팔천이백오십만오천이백원정(₩82,505,200)
 - ※ 재료비 등 선급금 지급('19.6.7, ₩57,000,000)

Ⅱ 계약 변경 시행

- 1. 관련 근거
 - 1) 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의 2. 계약기간의 연장
- 2. 변경 사유
 - 1) 검사기관의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 요청(승강기안전부품 중 유압식엘리베이터 제어반 및 개문출발 방지장치 안전인증 지연에 따른 설치검사 지연)
 - 2) 계약기간 연장 공문 검토 결과 설치검사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연장기간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 설치검사)에 따라 반드시 설치검사 후 승강기를 운행하여야 함

3. 계약변경 내용

1) 1차 변경

| 구 분 | 당초 | 변경 | 비고 |
|------|------------------------------|--------------------------------|-----------|
| 계약기간 | '19.5.10.~ '19.7.8. (60일) | '19.5.10.~ '19.10.6. (150일) | 90일 연장 |
| 계약금액 | 82,505,200원 | 좌동 | |

2) 2차 변경

| 구 분 | 당초 | 변경 | 비고 |
|------|--------------------------------|---------------------------------|-----------|
| 계약기간 | '19.5.10.~ '19.10.6. (150일) | '19.5.10.~ '19.12.31. (236일) | 86일 연장 |
| 계약금액 | 82,505,200원 | 좌동 | |

4. 지체 상금 :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 미부과 ※ 위 변경사항 외 모든 사항은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

- 붙임 1. 계약변경 합의서 1부.
 - 2. 납기연장 요청 공문 1부.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물품계약 일반조건) 1부. 끝.